



ON THE SPOT
INVESTIGATION

현지조사제도 안내

www.longtermcare.or.kr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청렴^韓세상을 위한

약속

고객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건강하고 청렴한
정책문화 실천에 앞장서는 국민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청렴 문화 실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약속

- ▶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및 향응도 받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 ▶ 다문화가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활동**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나눔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 ▶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업무상 부조리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Contents

현지조사 제도 안내 2018



_ 현지조사

1. 현지조사란?
2. 조사대상기관 선정과정은?
3. 업무처리 절차는?
4.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는가?
5.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6. 부당청구란?
7. 권리구제 절차는?



_ 참고자료

1. 행정처분기준
2. 과징금 부과기준
3. 과태료 부과기준

ON THE SPOT INVESTIGATION

| 현지조사제도 안내 |





1

현 지 조사

- 01_현지조사란? /
- 02_조사대상기관 선정과정은? /
- 03_업무처리 절차는? /
- 04_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는가? /
- 05_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
- 06_부당청구란? /
- 07_권리구제 절차는? /

01

현지 조사란?



현지조사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사업의 적정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검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현장조사를 말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은 현지조사와 관련된 제반업무에 인력·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을 관리·감독 (부적정한 경우 경고·업무정지·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감독의 실효성 확보)
- ▶ 불법·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적발하여 부당이득을 환수 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방지 및 수급질서 확립
- ▶ 시설운영 및 제공된 급여가 법령 및 각종 고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확인 등으로 수급권 보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보고 및 검사)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37조의4(행정재처분 효과의 승계)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시행령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 제68조(양벌규정)
- ▶ 기타 :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



정기조사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부당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수시조사

신고나 민원 발생, 공단의 급여비용 청구경향 등 분석 또는 경찰 수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 청구 확인 또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즉시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항 중 수급자 보호 등을 위해 긴급조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

조사대상기관 선정과정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흐름도]

현지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급여비용 심사사항 관련
- 내부종사자 등 공익신고 및 민원 제보 관련
- 청구경향분석에 따라 적정운영 여부 확인필요 기관 등
- 자료제출요구 거부 기관 등
- 부당 적발된 기관과 동일법인 또는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

대외기관

- 검·경찰청 수사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확인 또는 인지 기관
-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에서 의뢰 기관

업무처리 절차는?



조사는 어떻게 실시되는가?



조사반의 구성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사인력을 지원 받아 현지조사반을 구성하며,
- 현지조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급여종별, 청구건수 및 금액 등), 조사대상기간, 선정사유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현지조사주관기관의 담당공무원을 반장으로 하고, 공단의 선임자를 팀장으로 업무를 수행



현지조사 기간

- ▶ 현지조사기간은 기관당 4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 가능 – 장기요양기관의 특성(급여종별, 청구건수 및 금액 등) 및 조사대상기간, 선정사유 등에 따라 적절한 조사기간으로 조정 가능



조사 대상기간

- ▶ **정기(기획)조사** – 현지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최근 6개월 급여제공분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과정 중 다음의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조사 시점에서 최근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발생 시점까지 소급하여 조사
 - 고의적 혹은 지속적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 2개 이상 장기요양기관의 담합 혹은 공모에 의한 조직적 거짓·부당 청구가 확인된 경우

- ▶ **수시(긴급)조사** – 조사선정 사유 등을 감안하여, 부당개연성이 있는 기간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지급된 3개월의 장기요양급여 제공분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 범위 내에서 대상기간을 선정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기관(휴폐업 장기요양기관, 조사대상 연계기관* 포함)
-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 **조사대상 연계기관** : 동일법인·대표자 등이 운영하는 기관 간 위법행위 관여 종사자의 이중 근무, 동일한 위법유형 발견 등 연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관

▶ 조사내용

기본항목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및 수급자 현황 - 법 제35조 제4항 장기요양급여 관련서류의 기록·관리 여부 - 법 제37조 제1항 및 제3항 각 호 위반 여부 - 법 제69조 제1항 각 호 위반 여부 - 자격·면허증 대여 등 관련법령(노인복지법제39조의14, 의료법제65조, 의료법제80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의3, 국민영양관리법제21조) 위반 여부 - 법 제37조의5 제1항 위반 여부
급여비용 관련	- 급여제공기록지 및 관련 자료, 청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유무(허위, 중일, 대체, 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 기타 탈법적 방법에 의한 급여비용 청구 행위 여부



▶ **조사의 통지** -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서상에 기재된 소속공무원이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현장조사서 및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고 자료의 제출 및 영치, 질문·검사 등 현지조사 협조요청을 통지

★ **근거**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1항 및 제17조1항

▶ **조사의 연기** - 조사대상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기관의 서면요청(조사 연기신청서)에 의해 조사 연기 가능

- 천재지변, 화재 또는 재해 등으로 조사수행이 어려운 경우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조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수사기관 등)에 관련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자료의 열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단, 증거인멸, 자료의 위·변조 등에 대비하여 필요시 조사자료 우선 징구 가능

- 조사연기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시작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 ▶ **주 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금을 조사대상기관의 월별 청구금액에서 전산상계
- 조사대상기관이 휴·폐업 등으로 전산상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고지를 실시하며, 체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

- ✓ 환수예정통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의견 제출
- ✓ 환수결정통보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이의신청서 제출
- ※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 ▶ **주 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 '과징금 부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구 분	행정처분의 종류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1 또는 2로 시작)	경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3으로 시작)	경고,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폐쇄명령



▶ 행정처분의 산출

– 장기요양기관기호별 각 위반항목별로 산출

○ 부당청구액의 비율 및 월 평균 부당금액에 따른 행정처분 산출

$$\text{부당청구액비율(\%)} = \frac{\text{조사대상기간의 총 부당금액}}{\text{조사대상기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times 100$$

$$\text{월 평균 부당금액} = \frac{\text{조사대상기간의 총 부당금액}}{\text{조사대상기간의 월 수}}$$

※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는 심사결정 비용의 합산금액임

○ 부당청구 외의 법령위반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산출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법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 절차

청문 실시

처분당사자에게 청문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사전통지서를 서면통보

의견검토 및 처분 확정

청문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등 청문실시 결과를 검토하고 행정처분 확정

행정처분의 통지 및 실시

행정처분 확정 후 그 결과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처분 실시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은?

▶ 과징금의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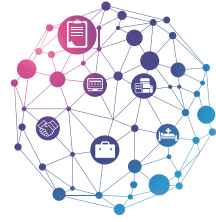
-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거짓 청구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금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
- 공표내용
 -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일 또는 설치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별,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의 성명

▶ 과태료의 부과

- 장기요양기관기호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과
- 각 위반항목별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과태료만을 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벌칙) 및 제68조(양벌규정),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347조(사기)

▶ 고발대상자

-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수급자 또는 보호자
- 그 외 관련자



▶ 고발대상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 수급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경우
- 조사대상기관 대표자 또는 관계인이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조사를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

부당 청구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는 ‘부당’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법령상의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 법령상 기준위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산정기준 등을 위반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러한 객관적인 위반 사실이 존재하면 되는 것이며, 그 외 청구자의 고의·과실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제1항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 당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권리구제 절차는?

◆ 의견제출

의견제출이란?	·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원인에 대한 사실관계 및 적법·타당성 여부를 해당 행정기관으로 재검토 요청하는 것으로서, 제출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	· 의견제출서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제출처	· 부당이득금 환수 - 현지조사를 지원한 공단 본부 또는 지역본부·지사 ·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등) :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과태료 부과 :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제출기한	· 처분에정통지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구체적인 기한은 처분 사전통지서에 고지 ※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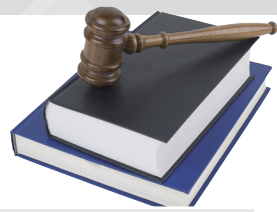
◆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에 이의·불복하는 경우

- 공단의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제기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 **제출기한** :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제출
 이의신청 시 별지 3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및 증거자료 첨부
- **제출처** : 공단 본부 요양운영실 요양제도부

▶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불복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 **제출기한** : 이의신청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시 별지 37호 서식의 "심사청구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및 증거자료 첨부
- **제출처** : 보건복지부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 현직조사 결과에 대하여 확정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등) 이 위법·부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절차 ·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제출자료	· 행정심판 청구서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방법	· 우편, 방문 및 온라인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행정처분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로 문의
제출처	· 행정처분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또는 관할 시·도
제출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이란?	· 현직조사 결과에 대하여 확정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행정처분(경고, 업무정지 등) ,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이 위법·부당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 법적근거 : 「행정소송법」
제출자료	· 소송 및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방법	· 행정소송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http://sladmin.scourt.go.kr) 참고
제출처	· 서울행정법원 : 서울 전지역 · 해당지방법원 본원 : 그 외 지역
제출기한	·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행정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불복하는 경우

-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제출기한**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제출처** :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이의를 제기한 경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실시

ON THE SPOT INVESTIGATION

| 현지조사제도 안내 |





2

참고자료

01_행정처분 기준 /

02_과징금 부과기준 /

03_과태료 부과기준 /

행정 처분 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시행규칙 별표2 참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 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 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 3)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나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2호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3)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1항제2호의2	지정취소			
4)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 제1항제6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9)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1항제7호	지정취소			

행정 처분 기준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1호	폐쇄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2호	경 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폐쇄명령
3)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 제3항제2호의2	폐쇄명령			
4)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5)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6)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장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다) 가) 또는 나) 외의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폐쇄명령 폐쇄명령	
8)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9)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 제3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10)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 제3항제5호	폐쇄명령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 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 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5 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

과징금 부과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제15조 관련)](시행령 별표2 참조)

1. 법 제37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3호의3·제5호·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법 제37조제3항제2호·제3호(제3호의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하며,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에 다목의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금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으로 한다.

다.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장기요양기관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그 장기요양기관의 연간 총 수입금액별로 정한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연간 수입 금액	연간 총 수입금액(단위 : 백만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천원)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에 따른 재가급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하는 장기 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바목에 따른 재가급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	
1	20이하	20이하	20이하		55
2	20초과 ~ 30이하	20초과 ~ 30이하	20초과 ~ 30이하	30이하	90
3	30초과 ~ 40이하	30초과 ~ 40이하	30초과 ~ 40이하	30초과 ~ 40이하	130
4	40초과 ~ 50이하	40초과 ~ 50이하	40초과 ~ 50이하	40초과 ~ 50이하	160
5	50초과 ~ 60이하	50초과 ~ 60이하	50초과 ~ 60이하	50초과 ~ 60이하	200
6	60초과 ~ 70이하	60초과 ~ 70이하	60초과 ~ 70이하	60초과 ~ 70이하	230
7	70초과 ~ 80이하	70초과 ~ 80이하	70초과 ~ 80이하	70초과 ~ 80이하	260

8	80초과 ~ 90이하	80초과 ~ 90이하	80초과 ~ 90이하	80초과 ~ 90이하	300
9	90초과 ~ 100이하	90초과 ~ 100이하	90초과 ~ 100이하	90초과 ~ 100이하	330
10	100초과 ~ 120이하	100초과 ~ 120이하	100초과 ~ 120이하	100초과 ~ 120이하	350
11	120초과 ~ 140이하	120초과 ~ 140이하	120초과 ~ 140이하	120초과 ~ 140이하	410
12	140초과 ~ 160이하	140초과 ~ 160이하	140초과 ~ 160이하	140초과 ~ 160이하	460
13	160초과 ~ 180이하	160초과 ~ 180이하	160초과 ~ 180이하	160초과 ~ 180이하	530
14	180초과 ~ 200이하	180초과 ~ 200이하	180초과 ~ 200이하	180초과 ~ 200이하	591
15	200초과 ~ 300이하	200초과 ~ 300이하	200초과 ~ 300이하	200초과 ~ 300이하	778
16	300초과 ~ 400이하	300초과 ~ 400이하	300초과 ~ 400이하	300초과 ~ 400이하	1,090
17	400초과 ~ 500이하	400초과 ~ 500이하	400초과 ~ 500이하	400초과 ~ 500이하	1,400
18	500초과 ~ 600이하	500초과 ~ 600이하	500초과 ~ 600이하	500초과 ~ 600이하	1,710
19	600초과 ~ 700이하	600초과 ~ 700이하	600초과 ~ 700이하	600초과 ~ 700이하	2,030
20	700초과 ~ 800이하	700초과 ~ 800이하	700초과 ~ 800이하	700초과 ~ 800이하	2,340
21	800초과 ~ 900이하	800초과 ~ 900이하	800초과 ~ 900이하	800초과 ~ 900이하	2,670
22	900초과 ~ 1000이하	900초과 ~ 1000이하	900초과 ~ 1000이하	900초과 ~ 1000이하	2,960
23	1000초과 ~ 1200이하	1000초과	1000초과 ~ 1200이하	1000초과 ~ 1200이하	3,440
24	1200초과 ~ 1400이하		1200초과 ~ 1400이하	1200초과 ~ 1400이하	4,020
25	1400초과 ~ 1600이하		1400초과 ~ 1600이하	1400초과 ~ 1600이하	4,680
26	1600초과 ~ 1800이하		1600초과 ~ 1800이하	1600초과 ~ 1800이하	5,300
27	1800초과 ~ 2000이하		1800초과 ~ 2000이하	1800초과 ~ 2000이하	5,880
28	2000초과		2000초과	2000초과 ~ 2200이하	6,620
29				2200초과 ~ 2500이하	7,280
30				2500초과 ~ 3000이하	8,560
31				3000초과	11,590

비 고

1. 총 수입금액은 장기요양시설업으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금액과 수급자로부터 받은 본인일부 부담금 금액의 합계로 한다.
2. 연간 총 수입금액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휴업 또는 재 개설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 수입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의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초로 연간 총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3.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이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두 종류 이상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인 경우 먼저 그 각각의 연간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과징금을 산정한 후, 그 각각의 과징금을 합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의 총 금액을 산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제3항제4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별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라 청구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비용(이하 “부당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가.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2배
 나. 업무정지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3배
 다. 업무정지기간이 30일 초과 50일 이하인 경우: 총 부당금액의 4배
 라.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총 부당금액의 5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시행령 별표3 참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	50	100	200
나.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교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3	50	100	200
라.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폐업·휴업 신고 또는 자료이관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	50	100	200
바. 법 제3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4호의2	500	500	500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6호	25	50	100
아. 법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7호			
1) 법 제60조를 위반하여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	100	200
2) 법 제61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00	200	300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법 제69조 제1항제8호	100	200	30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신고할 수 있는 사람

전 국민 누구나 가능

포상금

- 내부종사자 신고 최고 **2억**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기타 일반인 최고 **500**만원

신고방법

- 방문·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디서나 가능
- 홈페이지 접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 방문·우편 등이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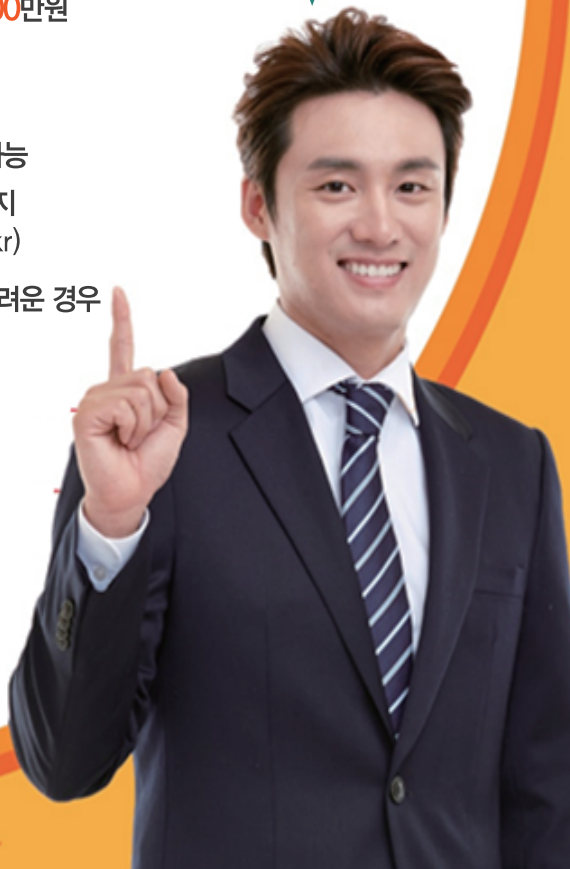
☎ 신고 상담전화

서울·강원	02-2126-8630
부산·울산·경남	051-801-0470
대구·경북	053-650-9940
광주·전라·제주	062-250-0374
대전·세종·충청	042-605-7540
경기·인천	031-230-7914
본부	033-811-2008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인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2016년 1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MEMO





ON THE SPOT
INVESTIGATION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현지조사제도

안내